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통 보

제 목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(인가·등록·신고 수리) 등 처리현황 통보소홀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내 용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시설과 [표1], 동법 시행령제2조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으로서 행정안전부령¹⁾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개설에 앞서 사전 동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시설(별표1)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, 경보시설 등을 설치하고, 실내 장식물에 있어서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성능이 있는 벽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도록 규

1)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营业을 말한다. 1) 전화방업, 화상대화방업 :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, 텔레비전,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) 수면방업 : 구획된 실 안에 침대, 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, 3) 콜라텍업 :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

정하고 있다

[표1]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장

업 종	관 계 법 령	담당부서	
		시	구·군
-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 - 제과점, 단란주점 - 유흥주점	- 식품위생법 (영업의 종류 시행령 제21조 8항 허가 법 제37조)	식의약안전과	환경위생과
- 영화영상관, 비디오방 - 비디오물 소극장 - 복합영상물제공업	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(영업의 종류 제2조/ - 허가 36조(영화상영관), 58조(비디오물))	문화예술과	문화체육(관광)과
- 학원·독서실	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(정의 제2조/ 등록 제6조)	교육청	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원과
- 목욕장업	- 공중위생관리법 (정의 제2조, 신고 제3조)	식의약안전과	환경위생과
- 게임제공업, PC방업 - 복합유통게임제공업	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(정의 제2조, 허가 제26조)	문화예술과	사·군구(청) [문화체육(관광)과]
- 노래연습장	-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(정의 제2조, 등록 제 18조)	문화예술과	사·군구(청) [문화체육(관광)과]
- 산후조리원	- 모자보건법 (정의 제2조, 허가 제15조)	건강정책과	보건소, 환경위생과
- 고시원 - 전화화상대화방 - 콜라텍·수면방	- 자 유 업 종	국세청	세무서 (사업자 등록 신고) *1,000㎡ 이상 숙박시설
- 권총사격장	-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및 4조	경찰청	경찰서 [생활질서과]
- 골프연습장	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영업의 종류 제10조 1항, 신고 제20조	체육지원과	문화체육(관광)과
- 안마시술소	- 의료법82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	식의약안전과	보건소, 환경위생과

그리고 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 7조①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허가, 인가, 등록, 신고수리(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)를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소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²⁾의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동법 제7조②항에 따라 허가신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호³⁾의 어

2)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①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 : 1).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, 2).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, 3)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

3)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②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 : 1) 휴업,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2) 영업내용의 변경, 3)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)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등

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그런데, 울산광역시 ○구청, ○구청, ○구청, ○구청, ○○군청, ○○교육청에서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8항등에 따라서 인터넷 PC방, 노래주점 등 소관별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처리하면서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①항에 따라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[표2]와 같이 울산시 중구 다운로 69번지 소재한 ○○노래연습장 등 184개소를 통보하지 않았다.([붙임] 참조)

이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서는 내부구조 임의변경⁴⁾, 안전시설 미 준수⁵⁾ 등 위법, 부당사례가 발생하였고,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발생 이후에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처리하고 있어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[표2] 2015~2017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처분 현황(붙임 참조)

4) 내부구조 임의 변경에 따른 화재발생 사례 : ① 울산 ○구 ○○로 000번지 소재 ○○노래주점은 '07년 소방시설완비증명 소급 발급대상이나 영업장내 샌드위치 패널 임의 구획후 설치한 운수기에서 2000.00.0.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지위승계 통보 누락

② 울산 ○구 ○○로 00번길 0 ○노래타운은 룸 1개소를 직원 휴게실로 변경하고 전기패널 설치 후 사용 중 온도조절장치의 과부화로 2000.0.00.일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지위승계 통보 누락

5) 울산 ○○군 ○○길 00번지 소재 ○○○스크린골프연습장은 2011년 완비증명서 발급당시 탕비실이나 조리실 등의 용도가 없었음에도 실내 조리시설 설치로 2000.0.00. 화재발생

업 종	허가청	허가부서	미 통보(건)	비 고
인터넷 PC(게임제공업)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, 비디오 감상실	○구청	○○○○실	33	세부현황 “붙임”참조
	○구청	○○○○과	5	
	○○군청	○○○○과	1	
단란주점, 휴흥주점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등	○구청	○○○○과	9	"
	○구청	○○○○과	10	
	○구청	○○○○과	59	
	○○군청	○○○○과	29	
스크린골프장	○구청	○○○○실	11	"
	○구청	○○○○과	6	
	○구청	○○○○과	6	
	○○군청	○○○○과	11	
산후조리원	○구청	○○○	1	"
	○○군청	○○○	1	
학 원	○○○○지원청	○○○○○○과	1	"
	○○○○지원청	○○○○○○과	1	

※ 울산광역시(○○본부), 중구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통보] ①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허가 등 처리를 하였음에도 통보하지 않은 영업시설이 있는지 일제 확인하여 관할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즉시 통보하기 바라며,

② 앞으로 허가 등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①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통보하고, 대상처 누락으로 인한 소방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③ 각 소방서별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미통보된(“별첨” 표 1-1 참조) 다중이용

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수, 내부구조변경 여부 등 위법 부당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